

외환거래약정서(국문) 약관 공시사항

1. 기본사항

제정일	개정시행일	판매종료여부(종료일)	기존고객적용여부
2010.02.01	2018.07.09		

2. 개정대비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3. 담당부서명 : 자금부

외 환 거 래 약 정 서

년 월 일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_____ (인)

거래처: _____

주 소: _____ (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수령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	(인)
--	-----

인감대조	(인)
------	-----

--	--

위 거래처 (이하 "거래처" 라 함)와 위 은행(이하 "은행" 이라 함)은 제 1 조 각 호에 정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르기로 한다.

제 1 조(적용범위)

이 약정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거래(이하 "외환거래" 라 함)에 적용하기로 한다.

1.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매매(현물환 및 선물환 포함)
2. 외국통화간의 매매(현물환 및 선물환 포함)
3. 기타 각 전호에 준하는 거래

제 2 조(관련 규정의 준수)

1. 거래처는 이 약정서에 의한 모든 개별 외환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규정과 기타 모든 **관련 법규**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임을 보장한다.
2. 거래처는 개별 외환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외환계약을 체결할 때나 그 이전에 외환계약의 실수요

를 입증하기 위한 거래 증빙서류 혹은 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기로 한다.

제 3 조(외환계약의 체결 및 성립)

1. 이 약정에 의한 개별 외환계약은 서면 합의서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서면, 구두, 전화, 팩시밀리,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간통신망) 또는 기타 통신수단에 의해 외환거래를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한 때에 성립한다.
2. 거래처는 이 약정에 의한 개별 외환계약을 체결하고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거래처의 거래담당자(이하 “ 거래담당자” 라 함)의 성명, 부서, 직책, 거래종류, 거래 한도 및 이들이 사용할 인감, 서명, 명판, 전화번호(“ 수권전화번호” 라 함), 팩시밀리 번호 등을 별지 기재와 같이 지정한다. 거래담당자와 수권전화번호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3. 거래처는 거래담당자가 변경, 추가 또는 삭제되거나 제 2 항의 각 항목이 변경, 추가 또는 삭제되는 즉시 이를 은행에 통지하기로 하며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거래처가 부담한다.

제 4 조(시간외 거래 또는 장외 거래)

이 약정에 의한 외환계약은 거래처 및 은행의 영업지점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또한 거래처 및 은행의 사무실 내·외 어디에서든 제 3 조 제 2 항에 의한 거래담당자를 통하여 체결할 수 있다. 영업시간 외에 또는 각 당사자들의 사무실 아닌 다른 장소에서 체결된 외환계약은 마치 그러한 계약이 영업시간중에 각 당사자들의 사무실에서 체결된 것과 같이 거래처 및 은행에 대하여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다.

제 5 조(거래내용의 확인 등)

1. 이 약정에 따라 성립한 모든 외환거래는 **거래일 다음 7 영업일**(본 항에서 “ 영업일” 이라 함은 은행의 외환업무 취급일을 의미함. 이하 같음.)까지 은행과 거래처간에 우편, 텔렉스, 팩시밀리 또는 기타 전신수단을 이용하여 교환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은행은 외환거래의 체결 즉시 이 외환거래의 내용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외환거래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2. 제 1 항의 **확인서는 외환계약에 관한 하나의 증거에 불과하며**, 은행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외환계약의 성립, 유효성 또는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은행은 제 1 항에 의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

래처에게 교부하는 경우 “ 거래처가 은행의 확인서를 받은 때로부터 7 영업 일 이내에 우편, 텔렉스, 팩시밀리 또는 기타 전신수단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인서의 기재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라는 사실을 고지한다.

3. 은행은 이 약정에 따른 외환거래의 체결, 거래처의 지시 및 확인 등과 관련된 전화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고 거래내용에 대한 분쟁 발생시 이 녹음 내용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제 6 조(약정간의 관계)

1. 이 약정서, 이 약정서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외환계약 및 그와 관련하여 당사자들간에 합의된 외환계약상의 개별약정(그리고 동 약정이 외환거래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한, 각 확인서), 이 약정서에 대한 부록(있는 경우) 및 그에 대한 모든 변경(“ 개별약정” 이라 함)은 전체로서 당사자들간의 단일한 약정을 구성한다. 이 약정서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외환거래는 그러한 개별 외환거래들이 전체로서 당사자들간의 단일한 계약을 구성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 다만, 이 약정과 개별약정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약정이 우선한다.
2. 이 약정에 의한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외국환어음의 매입, 외화표시 대출 등 외환거래 이외의 거래를 의뢰한 경우에 있어서는 외환거래의 성립에

의하여 은행이 당연히 이들의 의뢰에 응낙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제 7 조(담보와 보증)

1.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거래처는 은행과 협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예치한다.
2.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환율의 변동으로 계약보증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거래처는 은행과 협의한 바에 따라 그 계약보증금을 추가 예치한다.

제 8 조(선물환 계약의 인도일 산정)

1. 계약기간을 일단위로 약정하여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 또는 외국통화간의 개별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 이후 두 번째 영업일(계약체결일은 포함하지 않으며, 한국 및 해당 통화국에서의 은행 영업일을 말함. 이하 같음)로부터 기산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인도일로 한다. 다만, 외국통화간의 선물환거래의 경우 해당통화별 국제금융시장의 거래관행이 위와 다른 때에는 그 국제금융시장의 거래관행에 따른다.
2. 계약기간을 월단위로 약정하여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 또는 외국통화간의 개별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 이후 두 번째 영업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월의 기산일과 같은 날을 인도일로 한다. 다만, 그 경우 제 1 항 단서를 준용하기로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기산일과

같은 날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월의 말일을 인도일로 한다.

3. 인도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인도일로 한다. 다만, 제 2 항의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이 다음 달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인도일로 한다.
4. 거래처의 선택으로 인도일을 확정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개별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처는 인도일로 확정하고자 하는 날의 3 영업일전까지 은행에 이를 통지한다.

제 9 조(은행에 의한 인도일의 연기 또는 계약의 종료 등)

1.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 천재지변, 폭동, 소요, 내란, 전쟁 또는 기타 불가항력과 같은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별계약의 결제일 또는 만기일, 기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에 은행이 약정서 또는 개별 외환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은행은 거래처와의 협의 후 그러한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인도일을 연기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경우 은행은 당해 개별 외환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반대거래로써 개별 외환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할 환율은 은행과 거래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0 조(거래처에 의한 인도일의 변경 또는 해지 등)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개별 외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그 인도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1 조(은행에 의한 해지 등)

1. 거래처에 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 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각 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거래처에게 14 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가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은행은 거래처와 체결한 개별 외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은행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개별 외환계약이 해지된 경우 은행은 그 즉시 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해지정산금의 구체적 내역과 그 계산근거, 해지정산금의 지급일(“정산일”)을 거래처에 서면 통보한다. 다만, 정산일은 해지통지일보다는 빠를 수 없다.

제 12 조(결제 등)

1. 거래처는 인도일에 개별 외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약정된 통화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은행은 거래처가 결제기일내에 결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거래처와 은행이 미리 합의한 거래처의 계정**에서 해당 외환거래계약을 결제할 수 있다. 은행이 거래처의 계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인출한 경우 지체 없이 고객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3. 별지에 기재된 거래처의 거래담당자와 은행에 등록된 거래처의 인감이 날인된 서면청구서 또는 영수증을 소지한 자는 누구든지 은행과의 외환계약의 결제와 관련하여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문서의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사고로 인한 손해는 거래처가 부담한다. 다만, 은행이 문서가 위조, 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 조(결제에 관한 특약)

이 약정에 따른 개별 외환계약의 결제에는 다음을 적용한다.

1. 경계에 의한 정산(Netting by Novation) 방식 - 어느 개별 외환계약(“ 계약 A”)에 따라 거래처 또는 은행이 일정한 통화(“ 제 1 통화”)를 다른 통화(“ 제 2 통화”)와 교환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해야 하는 인도일이 같은 날 또

는 그 후에 체결된 다른 개별 외환계약(“ 계약 B”)에 따라 은행 또는 거래처가 제 1 통화를 제 2 통화 또는 기타 다른 통화(“ 제 3 통화”)와 교환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해야 하는 인도일과 일치하는 경우, 후에 체결된 계약 B 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 A 와 계약 B 에 따른 채무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새로운 채무에 의하여 대체된 것으로 본다.

- 1) 제 1 통화에 관하여(제 2 통화가 계약 A, 계약 B 에 공통되는 경우 제 2 통화에 관하여도)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해야 할 금액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초과금액만을 인도일에 인도해야 한다.
- 2) 제 1 통화에 관하여(제 2 통화가 계약 A, 계약 B 에 공통되는 경우 제 2 통화에 관하여도)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해야 할 금액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을 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새로운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본항에 따른 정산의 효과는 공통되는 통화에 한정되며, 계약 A 와 계약 B 에 따라 은행 또는 거래처가 서로 상이한 통화를 인도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 또는 거래처가 위 인도일에 각 상이한 통화를 인도해야 할 채무는 본항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거래처는 제 3 자가 제공한 보증, 담보 등은 본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채무를 계속하여 보증하고 담보하는 것임을 확약한다.

2. 차액결제(Settlement Netting)방식 어느 개별 외환계약(“ 계약 X”)에 따라 거래처가 일정한 통화(“ 제 1 통화”)를 다른 통화(“ 제 2 통화”)와 교환하여 은행에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래의 인도일이, 다른 개별 외환계약(“ 계약 Y”)에 따라 은행이 제 1 통화를 제 2 통화와의 교환하며 거래처에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래의 인도일과 일치하는 경우 위 계약들에 의한 결제는 자동적으로 다음과 같이 차액결제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며 차액결제에 의하여 “ 계약 X” 및 “ 계약 Y” 에 따라 은행 및 거래처 각자의 인도의무는 인도일에 자동적으로 충족되고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각각의 통화에 관하여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하여야 할 금액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초과 금액만을 인도일에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해야 할 금액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금액과 대등한 경우에는 쌍방의 인도의무는 자동적으로 상계되어 소멸한다.

3. 제 2 항의 차액결제방식은 제 1 항에 의거 경개되는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제 14 조(비용 등의 부담)

1. 이 약정에 의한 모든 외환거래의 준비 또는 이행 등과 관련하여 은행의 책

입 있는 사유 없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에 대하여는 거래처가 부담한다. 거래처는 인도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도할 금액에 대하여 인도일로부터 실제 이행일까지 은행의 원화여신(당해 통화가 원화인 경우) 또는 외화여신(당해 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연체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2. 제 1 항, 제 2 항의 수수료, 비용, 연체이자 등의 요율 계산방법 및 환율과 그 적용방법(“ 계산방법 등” 이라 함) 은 계약체결시 은행과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바에 의해 아래와 같이 한다.

수수료 ()

비용 ()

연체이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청산에 따른 배당 등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 채무자”)가 약정된 통화(“ 계약통화”) 이외의 통화(“ 지급통화”)로 지급 또는 상환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는 지급통화를 계약통화로 환산한 금액 상당액 한도내에서만 이행되어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할 환율은 그러한 지급 또는 상환일의 계약통화에 대한 은행의 대고객 전신환 매매율에 따른다. 계약통화로 환산한 금액 상당액이 원래 지급하여야 할 계약통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인 타방당사자(“ 채권자”)에게 그 부족금을 지체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통화로 환산한 금액 상당액이 원래 지급하여야 할 계약 통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초과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한다. 위 부족금 또는 초과금 지급채무는 기존 외환계약에 따른 지급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로 본다.

제 15 조(양도금지 등)

은행과 거래처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외환거래에 의한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6 조(적용기간)

이 약정의 적용기간은 은행과 거래처가 합의한 바에 따른다.

제 17 조(언어)

이 약정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며 국문본과 영문본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국문본이 우선한다.

제 18 조(준거법령 등)

거래처와 은행은 이 약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대한민국

의 외국환 관련법규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관할법원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지) 거래처의 거래담당자 및 수권 전화번호

일 자 : 년 월 일

수 신 :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1. 귀 은행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당사를 대리하여 구두에 의한 거래, 거래내역 확인 및 자금이체에 관한 결제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명단에 기재된 사항 중 어느 것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는 귀행에 그 변경내역을 즉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성명	부서	직위	권한 (주 1)	거래 종류 (주 2)	거래 한도 (주 3)	인감/서명/ 명판 (주 4)	전화번호 Email 주소 팩시밀리번호	기타 통지할 사항 (주 5)			
								통화	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

(주 1) 권한 : ① 거래 담당 ② 거래내역 및 결제 내역 확인

(주 2) 거래 종류 : ① 현물환 거래

② 선물환 거래

③ FX SWAP 거래

④ 기타 파생상품거래

⑤ 상기 모든 외환거래

(주 3) 기재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을 제한하는 한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 4) 다른 통지(기타 통지할 사항에 기재) 없으면 위에 신고된 인감, 서명, 명판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사용한 경우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주 5) 거래 종류나 한도의 제한, 인감/서명/명판의 사용, 결제 계좌 정보 등 외환 거래 관련하여 은행에 알릴 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회사명

(인)